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1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2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6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2. 5.
-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 ☐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9조제1항제15호 신설).
- ☐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2군임시마약류에 대한 벌칙은 현행을 유지함(안 제61조제1항제7호·제11호).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2의2.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설>	12의3.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3.·14. (생략)	13.·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	4.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현행	개정안
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6. (생략) ②·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u>향정신성의약품</u>, 대마 또는 <u>임시마약류</u>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 10의5. (생략)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u>향정신성의약품</u>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생략) ②·③ (생략)	<u>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u>-----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u>-----<u>2군 임시마약류</u>----- 8. ~ 10의5. (현행과 같음) 11. ----- -----<u>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u>-----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서 마약류¹⁾의 사용 및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²⁾,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숨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서 마약류 취급자³⁾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대마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에서 마약류취급자와 이 법에 따라 마약류·임사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다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 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목적과 달리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지 못함.

□ 한편, 현행법은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등 다른 조문에서도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이 규정한 각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무기 또는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원(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⁵⁾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보다 마약류취급자의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정형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의 경우 현행법과 달리 그 종류⁶⁾에 따라 벌칙을 차등하되 최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대비 벌칙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및 개정안 벌칙 비교 >

구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1군	2군
현행	10년이하/1억원이하	5년이하/5천만원이하						
개정안	1년 이상 유기징역	10년이하/1억원이하	5년이하/5천만원이하	X			1년 이상 유기징역	5년이하/5천만원이하

□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으로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라 위반시 벌칙이 상향되는 일부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6) 현행법은 그 오남용 우려의 정도 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구분하고, 임시마약류의 경우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 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은 해당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⁷⁾,
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제12호의3·제12호의4는 이들 조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일반인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벌칙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규율하는 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벌칙 강화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벌칙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5호 마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인 제재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반대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가 투약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범위에는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남용 목적의 자가 투약 행위에 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 검토) 업무상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반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인 제재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판단되는바 동 개정안에 반대함.

또한,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매우 다양한데,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이나 조직적 범죄행위와 같이 사회적 위해성이 큰 경우도 있으나 업무 과정에서의 착오, 판단상의 과실, 또는 비의도적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도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및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과도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대한약사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급’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고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의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